

# 『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한 해제 청원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4년 3월 29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 광평동 172-6번지 궁전주택304호 이성수 외 38인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4월 27일

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청원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전 인 철 의원

나. 청원내용

-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,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,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(종합운동장)로 지정한 후,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,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,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,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 요망.

#### ○ 도시계획결정현황

##### ○ 최초결정

- '78. 4. 8 : 도량동 산15번지 일원 160,000m<sup>2</sup>(48,400)
- '78. 12. 21 : 광평동 219-3번지 일원 79,149m<sup>2</sup>(23,942) ※ 현재 주경기장 일원

##### ○ 변경결정

- '87. 2. 7 : 도량동 산15번지 일원 폐지
- '87. 2. 7 : 광평동 219-3번지 일원 236,174m<sup>2</sup>(71,442)시설변경결정

- '90 도시계획재정비시 야구장 부지등 변경(축소) 입안제안
  - 현재 야구장, 정구장, 배구장 일원 80,500㎡(24,500)를 축소
  - '87년 운동장을 폐지한 도량동 산15번지 일원에 80,500㎡를 신설계획 입안
- '91. 06. 28 변경계획 입안부결 (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)
  - '87년 운동장 폐지한 장소(도량동)에 다시 운동장 신설계획은 타당성 없음
  -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 발휘와 이용의 편의상 기존(광평동)시설 존치

○ 광평동 종합운동장 부지현황

○ 전 체 : 236,174㎡ (71,442)

- 기 매 입 : 120,804㎡ (36,543) - 51%
- 국·공유지 : 31,271㎡ ( 9,459) - 13%
- 사 유 지 : 84,099㎡ (25,440) - 36%
  - 야구장, 배구장, 정구장 66,270㎡ (20,047) - 28%
  - 수영장, 보조경기장 17,829㎡ ( 5,393) - 8%

※ 미매입 토지매입비 추정 : 25,440 × 614천원/평 = 156억원 정도

※ 종합운동장 시설계획

- 주 경 기 장 36,000㎡ (기시행)
- 실내체육관 7,800㎡ ( " )
- 도로, 녹지, 주차장 130,874㎡ (일부시행 - 도로, 주차장)
- 야 구 장 24,600㎡
- 보조경기장 23,000㎡
- 실내수영장 1,200㎡
- 정 구 장 7,200㎡
- 배 구 장 5,500㎡`

다. 참고사항

- 진정서 회시 공문 사본(구미시, 경상북도, 국민고충처리위원회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구미시 광평동 172-6 궁전주택 304호 이성수 외 38명으로부터 『도시 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』은

-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,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,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로 지정한 후,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,

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,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,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 요망하는 내용이며,

- 구미시 회시내용(2000. 8. 29 도시58410-1592)을 살펴보면,
  -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, 야구장, 실내체육관, 실내수영장, 보조경기장 배구장, 정구장 및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고 단지화하여, 시설 상호간 이용상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, 일부시설(야구장 등)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
  - 우리 시 재정형편상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,
  -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시설의 존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하겠다고 회시 하였음.

-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

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에 대하여는

도시계획시설 지정 또는 해제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할 경우에는, 청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